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5. 7. 2.] [법률 제20899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·의약품 등의 시험·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문서의 위조·변조를 방지하며,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(인)

2025년 4월 1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

⊙ 법률 제20899호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8호 중 "제11조제2항"을 "제11조제2항 전단"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험·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)로 발급할 수 있다.

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7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1.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
2.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·검사기관의 임직원
3.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,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

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